

1. 개정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,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업무 등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(안 제9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양수산부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
2.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
3.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
4.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
5. 법 제10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
6.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
7. 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

8.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9.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따른 사무
10.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영농·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
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림</u> <u>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</u> <u>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</u> <u>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</u> <u>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</u> <u>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</u> <u>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</u> <u>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</u> <u>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</u> <u>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</u> <u>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</u> <u>처리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</u> <u>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</u> <u>2.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어업</u> <u>인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</u> <u>3.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</u> <u>경영인들의 선정 및 지원에</u> <u>관한 사무</u> <u>4.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교육</u> <u>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5. 법 제10조에 따른 청년농어</u> <u>업인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6.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어</u>

	<u>업인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</u> 7. <u>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어</u> <u>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</u> 8. <u>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</u> <u>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</u> <u>사무</u> 9. <u>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</u> <u>환수에 따른 사무</u> 10. <u>법 제17조에 따른 청년농어</u> <u>업인 영농·영어 활동 체험</u> <u>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</u>
--	---